

1. 개정이유

알기 쉬운 법률용어 사용 및 관련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법령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영업의 ‘폐지’를 영업의 ‘폐업’으로 하고(안 제16조제1항, 제46조제1항, 제2항, 제4항), 광업권 및 어업권의 평가에 관한 인용 규정을 수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전

3) 행정규제 : 규제심사 대상 사전심사 요청(국무조정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6호 중 “폐지”를 “폐업”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중 “「광업법 시행규칙」 제19조”를 “「광업법 시행령」 제30조”로 한다.

제44조제1항 및 제2항 중 “별표 4”를 각각 “별표 10”으로 한다.

제46조의 제목 “(영업의 폐지에 대한 손실의 평가 등)”을 “(영업의 폐업에 대한 손실의 평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폐지하는”을 “폐업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폐지는”을 “폐업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폐지 후”를 “폐업 후”로, “폐지에”를 “폐업에”로 한다.

제63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별표 4”를 각각 “별표 10”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6조(보상평가의 의뢰 및 평가 등) ①사업시행자는 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물건에 대한 평가를 의뢰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보상평가의뢰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감정평가법인 등에게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16조(보상평가의 의뢰 및 평가 등) ①----- ----- ----- ----- ----- -----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6.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그 <u>폐지</u> 또는 휴업의 구분	6. ----- ---- <u>폐업</u> -----
7.·8. (생략)	7.·8.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43조(광업권의 평가) ①광업권에 대한 손실의 평가는 「 <u>광업법 시행규칙</u> 」 제19조에 따른다.	제43조(광업권의 평가) ①----- ----- 「 <u>광업법 시행령</u> 」 제30조-----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44조(어업권의 평가 등) ①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어업권이 제한·정지 또는 취소되거나 「수산업법」 제14조 또는 「내수면어업법」 제13조에 따른 어	제44조(어업권의 평가 등) ①----- ----- ----- ----- -----

업면허의 유효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어업권 및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에 대한 손실의 평가는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다.

②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어업권이 취소되거나 「수산업법」 제14조 또는 「내수면어업법」 제13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른 어장에 시설을 이전하여 어업이 가능한 경우 해당 어업권에 대한 손실의 평가는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 중 어업권이 정지된 경우의 손실액 산출방법 및 기준에 의한다.

③ ~ ⑤ (생략)

제46조(영업의 폐지에 대한 손실의 평가 등) ①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营业을 폐지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2년간의 영업이익(개인영업인 경우에는 소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영업용 고정자산·원재료·제품 및

별표 10

②

별표 10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46조(영업의 폐업에 대한 손실
의 평가 등) ①-----
----- 폐업하는 -----

상품 등의 매각손실액을 더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②제1항에 따른 영업의 폐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로 한다.

1. ~ 3. (생략)

③ (생략)

④제2항에 불구하고 사업시행
자는 영업자가 영업의 폐지 후
2년 이내에 해당 영업소가 소재
하고 있는 시·군·구 또는 인
접하고 있는 시·군·구의 지역
안에서 동일한 영업을 하는 경
우에는 영업의 폐지에 대한 보
상금을 환수하고 제47조에 따른
영업의 휴업 등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⑤ (생략)

제63조(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어
업의 피해에 대한 보상) ①공익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인근에 있는
어업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
업시행자는 실제 피해액을 확인
할 수 있는 때에 그 피해에 대
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

②----- 폐업은

-----.

1. ~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 폐업 후

----- 폐업에 -----

-----.

⑤ (현행과 같음)

제63조(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어
업의 피해에 대한 보상) ① ---

-----.

실제 피해액은 감소된 어획량 및 「수산업법 시행령」 <u>별표 4</u>의 평년수익액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상액은 「수산업법 시행령」 <u>별표 4</u>에 따른 어업권·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이 취소되거나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보상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생략)	----- ----- <u>별표 10</u> ----- -----. ②----- ----- <u>별표 10</u>----- ----- ----- ----- ----- -----. ③ (현행과 같음)
---	--